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 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여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설(안 제7조의2)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5125(2022.10.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849(2022.10.6.)호]
-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022.10.20. ~ 2022.11.9.)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 신고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